

피 의 자 신 문 조 서 (제 0 회)

피 의 자 : 피의자 성명

주민등록번호 :

위 사람에 대한 (죄명 피의사건)에 관하여 0000. 00. 00. 00:00 (조사장소)에서 군사법경찰관 (계급 ○○○)은/는 군사법경찰관/리 (계급 ○○○)을/를 참여하게 한 후, 피의자에게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.

1.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1.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
1.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1.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 :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?

답 : 자필 /기명날인 또는 서명

문 :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?

답 : 자필 /기명날인 또는 서명

문 :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?

답 : 자필 /기명날인 또는 서명

이에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.

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(읽어준바) 진술한 대로 옳거나 증감·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(기명날인)하게 하다.

진 술 자

성 명 ①인

0000. 00. 00.

군사법경찰관

성 명 ①인

군사법경찰관/리

성 명 ①인